

입 법 정 보

CONTENTS

- * 법령 입법 동향
- * 타 시·도 자치법규 입법동향
- * 법령 해석 사례
- *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회답
- * 주요 판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법령 입법 동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 제정이유

- ▶ 종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 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19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8.] [법률 제21538호, 2026.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6호, 2026. 7.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대상과 절차,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시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기업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1조의2 신설)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격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으로 정함.

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 및 절차(제15조의2 신설)

- 1)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격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이공계인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함.
- 2) 이용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제16조의2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타 시도 자치법규 입법 동향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시행 2026. 7. 8.] [부산광역시조례 제7980호, 2026. 7. 8. 전부개정]

● 개정이유

- ▶ 현행 조례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취업·사회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4년 5월 제정됐으나, 당시에는 상위법이 마련되기 전으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 ▶ 위기아동·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지정·위탁
- ▶ 중복지원 제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

[시행 2026. 7. 14.] [경기도조례 제8933호, 2026. 7. 14., 제정]

● 제정이유

- ▶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접도구역 지정·관리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와 도로 주변의 미관보존 및 교통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 장래 도로 개발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보상비 절감과 같은 부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도로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 ▶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불합리한 접도구역으로 도민의 불편 및 재산권 제한 최소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 ▶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 ▶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법령 해석 사례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등 관련)

[법제처 26-0149, 2026. 6. 16., 민원인]

【질의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1조의3제6항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함)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

【회 답】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은 특정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그 산정·지급 요건 역시 휴직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장애가 없는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자녀별로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6항에서도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휴직일은 휴직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휴직 대상 자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휴직일도 변경되며,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11호) 제91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육아휴직 신청서에서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명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 이력 및 해당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휴직 이력까지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의 신청 단위, 휴직기간의 산정 단위, 수당지급의 단위가 모두 휴직 대상인 특정 자녀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령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 동일한 체계 하에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 역시 휴직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6항에 따라 휴직일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는 휴직일부터 18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18개월의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의 예외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중략).

한편,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도 휴직일부터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장애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의 목적은 다른 자녀의 양육으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장애 자녀를 이유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 제도와 연계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⑤ (생략)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원 구성 과정에서 고려사항 및 협의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의견26-0180, 2026. 7. 23., 경기도 의정부시]

【질의요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원 구성 과정에서 고려사항 및 협의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1. 20. 의견제시 25-0434 참조).

이 사안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안”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는 교섭단체별 의석분포,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의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지방선거 후 최초의 원구성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 여부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투표방법을 제한하거나 당선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 구성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의결조율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08. 8. 22. 해석례 08-0203 참조).

다만,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안 제8조의2를 근거로 특정 정당에 작위적으로 직위를 배분하거나 의원의 자유로운 입후보 및 투표를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장·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와 다른 법적 선거 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법령】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설)」

제8조의2(원구성 협의 및 균형 고려) ① 지방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는 교섭단체별 의석분포,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의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지방선거 후 최초의 원구성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여부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견발언신청서를 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견발언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회답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자금 가능 사용처에 관한 질의 회답

【문】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가능 용도는?

1. 지방의원의 출.퇴근차량 주유비 및 의정활동을 위한 AI번역 프롬프트 안경 구입비
2. 지역구 자치단체장들이나 기자들과의 정책 간담회 후 저녁식사비

【답】

1. 차량 유류비, AI 번역 프롬프트 안경 구입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주유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또는 입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AI번역 프롬프트 안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AI 안경을 정치자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4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정책간담회 식사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및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6. 8.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도과 답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12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임금]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2호 나목의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2026하,1430]

【판시사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업공무원 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2호 (나)목(이하 ‘공제조항’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제조항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② 통상의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전일제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업무 지휘·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다가 퇴근한 경우에 공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공제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근태관리 체계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 외 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